2018년도
본청(2차-산림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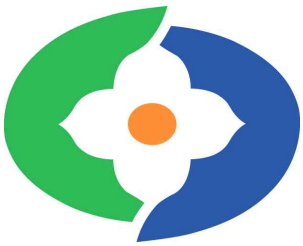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2018년도 본청(2차-산림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6. 18. ~ 6. 22. (5일간)
- **대상기관** : 산림과
-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4. 5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2건**
  - **행정상 조치** : 12건(주의 8, 시정 4)
  - **재정상 조치** : 회수 1건 367,000원 / 지급 1건 4,827,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감나무를 이용한 지역특화조림 조성)**
  - 위　　치 : 영동읍 당곡리 산27-1번지 일원
  - 사 업 량 : 자체 양묘한 감나무 2,400본 식재
  - 기대효과
    -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특화수종을 단지화 조림
    - 감나무 지역특화 수종단지를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12건 (산림정책 5, 산림보호 2, 산림소득 3, 공원녹지 1, 공통 1)	주의 8 시정 4		회수 1건 367천원 지급 1건 4,827천원
1	산림정책	◦ 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주의		
2		◦ 정책 숲가꾸기 사업집행 부적정	주의		
3		◦ 조림사업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주의		
4		◦ 군 홈페이지 자료관리 소홀	시정		
5		◦ 업무분장 부적정	주의		
6	산림보호	◦ 산지전용 복구 예치금 반환업무 소홀	시정		지급 4,827천원
7		◦ 관용차량 운행업무 소홀	주의		
8	산림소득	◦ 공유임야 대부료 정기분 부과 소홀	시정		
9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10		◦ 민간행사보조사업 정산 및 업무처리 소홀	주의		
11	공원녹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 부적정	시정		회수 367천원
12	산림정책 공원녹지	◦ 기한 내 준공검사 미실시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현 황】

<표1> 홈페이지 미공개 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시책업무추진비	2014.12.31.	2014 영동곶감 전국실버노래자랑 추진을 위한 지역농특산물 구입	1,000,000	카드
시책업무추진비	2016.12.27.	영동곶감 관외 판매행사(서울 용산역)홍보를 위한 지역농특산물 구입 지출	600,000	카드
시책업무추진비	2016.12.27.	2016 영동곶감축제 홍보용 지역농특산물 구입 지출	800,000	카드
시책업무추진비	2016.12.27.	영동곶감 관외 판매행사(부산역) 홍보를 위한 지역농특산물 구입	600,000	카드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담당자는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분임경리관(실·과장)에게 보고(결재) 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함.

○ 그럼에도 산림과는 2014.12.31.일『2014 영동곶감 전국실버노래자랑 추진을 위한 지역농특산물 구입』외 3건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카드지출하면서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책 숲가꾸기 사업집행 부적정

【현　　황】

○ 2017년 정책 숲가꾸기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별첨)

【위법부당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 조림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인 산림을 육성하고자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함.

○ 특히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 임지가 주 대상지로 어린나무 주변의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 등을 잘라주어 조림성공률 제고 및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Ⅲ-1-라에서는 어린나무 가꾸기의 작업시기를 6월~9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산림과에서는 정책 숲가꾸기(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6월 ~ 9월 사이(늦어도11월까지)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함에도 제1차 숲가꾸기사업(1공구)-영동지구외 4건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62.39ha는 3월 ~ 5월 중순까지 조기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숲가꾸기사업(영동지구)외 1건 41.4ha는 12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7건 103.79ha 사업을 권장시기에 맞지 않게 실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각각의 작업의 대상지, 작업의 시기, 작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책 숲가꾸기 예산 편성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다른사업과 구분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에도, 산림과에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단일건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숲가꾸기 사업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정책 숲 가꾸기(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조림사업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현 황】

○ 사업현황(표1)

사 업 명	사업량	설계액 (천원)	도급액 (천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적정 설계액 (설계액 대비)
◎◎◎◎ ◎◎◎ ◎ (★★) 조성사업 [사업1]	3.5ha	50,000	48,755	18.03.21	18.03.27	18.05.05	-	53,160천원 (증3,160천원)
△△△△ 조림사업 (▲▲지구) [사업2]	4.0ha	59,058	51,705	18.03.27	18.04.02	18.05.11	-	62,798천원 (증3,740천원)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각종 사업의 설계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고 예정가격 산정은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또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8. 3. 21. ○○○○ ▲▲▲과 계약하여 준공한「◎◎◎◎ ◎◎◎ ◎ (★★) 조성사업」외 1건에 있어 사업금액을 산정하면서 “2018년 조림사업 단비표(경제림 조성 통합단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예정지 정리 공종의 “불량림 벌채”에 대한 소요인부를 1ha당 6.25인[1.5인/0.24ha]으로 적용하였어야 하나 1.5인으로 잘못 적용하여 예정지 정리 단가가 [사업1]의 경우 1ha당 550,457원 [사업2]의 경우 561,320원이나 적게 산정되었고, 그 결과 총사업비도 (표1)과 같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조림사업 예정가격 산정시 조림사업 단비표의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군 홈페이지 자료관리 소홀
【현　　황】

○ 영동군 홈페이지 > 영동소개 > 실과소 안내 메뉴내
「부서별 주요사업과 월간 업무계획」게시창

부 서 명	2018년	비고
산림과	- 3월, 4월, 5월, 6월 월간업무 미게시	

※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는 미게시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군정 내용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부서별 주요사업과 월간업무 계획 등을 게시하여야 하나,

○ 산림과는 상기 현황 내역과 같이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2018년 3월 이후 월간업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분장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본청 실장·과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있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공무원 직급·전문성·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이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임.

○ 그럼에도 산림과는 매년 정기인사 외에 수시인사시 분장받은 업무를 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의 업무를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 등의 특단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담당업무를 변경시키는 소내인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직무능력 향상에 오히려 저해되고 직무몰입이나 직무만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무분장을 부적정하게 조정·실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특단의 사정없이 담당업무를 수시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고려한 업무분장을 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지급 4,827,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지전용 복구 예치금 반환업무 소홀

【현 황】

○ 산지전용 복구비 미반환 현황

신 고 자	산림소재지	허가면적 (㎡)	복구비 (원)	복 구 준공일	비 고
계		6,395	4,827,000		
◎◎◎◎◎◎◎◎◎ ★★★	○○면 ○○리 산○○	4,995	3,960,000	16.1.31	
◆◆◆◆◆◆◆◆◆◆◆◆	○○면 ○○리 ○○	1,400	867,000	16.8.31	

【위법부당사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43조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고 함)을 예치하여야함.

○ 또한 산지전용지를 복구하여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그 복구비(현금으로 예치된 경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함.

○ 그런데도 산림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 외 1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전용지 복구가 완료 되어 준공이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 예치금 총 2건에 4,827,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등 복구예치금 반환업무에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 ★★★ 외 1명에 대해 산지전용 복구 예치금 4,827,000원을 즉시 반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관용차량 운행업무 소홀

【현　　황】

〈표1〉 관용차량 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량운행일지 작성 여부	유류수불대장 작성여부
1	-	대형승용차	-	부	부
2	-	기타특수용	-	부	부
3	-	대형화물차	-	부	부
4	-	소형화물차	-	부	부
5	-	소형화물차	-	부	부
6	-	소형화물차	-	부	부
7	-	물탱크차	-	부	부
8	-	대형승용차	-	부	부
9	-	기타특수용	-	부	부
10	-	기타특수용	-	부	부
11	-	기타특수용	-	부	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의하여 관리하며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부서

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배정요청서, 그밖에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림과에서 보유중인 공용차량에 대해 2015년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배차신청서, 차량 운행일지, 근무상황부를 점검한 결과 상기 현황과 같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사용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 운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시 엄중 문책할 예정이니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유임야 대부료 정기분 부과 소홀

【현 황】

<표1> 공유임야 대부료 부과현황

연도	부과건수(건)	부과일	부과금액(원)	비고
2015	82	2015.03.06.	6,513,740	지연
2016	80	2016.03.22.	6,572,830	지연
2017	80	2017.08.11.	7,165,510	지연
2018	-	-	-	미부과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산림과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공유임야 대부료 정기분을 대부계약자 및 내역을 정리하여 대부료를 산출하여 세외수입 부과시스템 작업을 거쳐 대부계약자에게 대부료 납부고지서를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

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도 정기분 대부료는 기한내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8년도 정기분 대부료는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2018년도 정기분 대부료를 즉시 부과하기 바라며, 대부료 부과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현　　황】“별첨”

【위법부당사항】

○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신청·접수, 예산편성 요구·확정, 사업대상자 심사·확정, 보조신청 및 결정, 보조사업자 사업집행, 정산 등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사전에 마련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심사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년 간 지원이 지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목적 달성 등 사업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중단(일몰제 적용)이나 보조율 축소 등을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 사업을 개발 집중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산림과는 사업별 보조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세농가나 전년도 후순위 탈락자 등에 대한 사업지원 등 사업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농림사업(표고재배시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약초재배기반시설), 표고자목구입비지원(군비) 보조사업에 특정인이 적게는 2년 연속 많게는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영세농가나 전년도 후순위 탈락자 등에 대한 사업지원 등 사업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특정인이 연속하여 보조사업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행사보조사업 정산 및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원)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교부결정일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지급일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정산보고일	보조금 정산금액	보조금 정산검사일
2016년 ◎◎◎ ◎◎◎◎◎ 「▲▲▲▲ ▲▲.▲▲▲▲」	⊙⊙⊙⊙ ⊙⊙⊙	2016.1.20	1,500,000	2016.1.20	1,500,000	-	1,500,000	2016.2.17
2016년 ◎◎◎ ◎◎◎◎◎ 「▲▲▲▲ ▲▲.▲▲▲▲」	⊙⊙⊙⊙ ⊙⊙⊙	2016.9.2	500,000	2016.9.7	500,000	2016.12.22	500,000	2016.12.22
2017년 ◎◎◎ ◎◎◎◎◎ 「▲▲▲▲ ▲▲.▲▲▲▲」(1차)	⊙⊙⊙⊙ ⊙⊙⊙	2016.12.15	2,000,000	2016.12.16	2,000,000	2017.2.6	1,300,000	2017.2.13
2017년 ◎◎◎ ◎◎◎◎◎ 「▲▲▲▲ ▲▲.▲▲▲▲」(2차)	⊙⊙⊙⊙ ⊙⊙⊙	2017.1.19	1,500,000	-	1,000,000	2017.2.10	1,000,000	2017.2.13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예금사본,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1조

(정산보고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실적보고시 제출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정산검사)에 따라 군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Ⅲ. 지방보조금의 수행, ②지방보조금의 내용변경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을 받아야 하고, ④지방보조금 회계관리-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산림과에서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법정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교부결정한 사실이 있고, 【현황】에서와 같이 2016년 ◎◎◎ ◎◎◎◎◎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결과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정산검사를 하였으며, 2017년 ◎◎◎ ◎◎◎◎◎ 「▲▲▲▲ ▲▲·▲▲▲▲」(2차)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농가 포기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생겼음에도 변경된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감액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행사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시 사업계획서,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징구 후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기 바라며, 정산검사시에는 사업추진결과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하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변경교부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67,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 부적정

【현 황】

○ 시설공사 제잡비율 초과 산출현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2건						-367	
2018년 ▣▣▣▣ ⊙⊙⊙⊙사업	▲▲▲▲(주) ◐◐◐	2018.05.04	2018.05.09 ~ 2018.08.06	61,085	60,997	-88	관급자관급 제외
2018년 ◈◈◈ ★★★★★ ★★사업	▲▲▲▲(주) ◐◐◐	2018.05.04	2018.05.14 ~ 2018.07.02	61,603	61,324	-279	도급자관급 미포함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령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급자관급 미포함 시 (재+직노)×요율 적용하고,
- 도급자관급 포함 시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b. (재+직노)×요율×1.2 중 적은 값을 제경비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2018년 ▣▣▣▣ ⊙⊙⊙⊙사업”은 도급자관급액만 반영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관급자

관급액을 포함하여 88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설계하였고, “2018년 ◈◈◈ ★★★★★ ★★사업”은 도급자설치 관급액이 없음에도 도급자관급 포함 시 산식을 적용하여 279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설계하였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 산식을 적용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한 내 준공검사 미실시

【현 황】

○ 준공검사 기한 미 준수 현황(표1)

공 사 명	도급액(천원)	도급자	착공일	준공일	준공검사일(준공검사기한)	기한 초과일수	비고
8건							
2016년 ◐◐ ◐◐사업	35,802	-	2016.04.01	2016.04.25	2016.05.11 (2016.05.09)	2일	산 림 정책팀
2016년△△△△△(▲▲▲▲▲)△△△ △△△사업	62,929	-	2016.06.17	2016.09.12	2016.09.29 (2016.09.27)	2일	공 원 녹지팀
2017년 ★★★★ 사업	19,900	-	2017.10.13	2017.11.21	2017.12.06 (2017.12.05)	1일	
2018년 ◈◈ ◈◈사업(⊙⊙⊙)	58,220	-	2018.03.29	2018.04.27	2018.05.18 (2018.05.11)	7일	산 림 정책팀
2018년 ▣▣▣ ▣▣▣▣사업 (⊙⊙⊙)	50,908	-	2018.03.29	2018.05.04	2018.05.21 (2018.05.18)	3일	
2018년 ◎◎ ◎◎사업(⊙⊙⊙)	51,815	-	2018.03.29	2018.04.27	2018.05.18 (2018.05.11)	7일	
2018년 ○○ ○○사업(⊙⊙⊙)	55,620	-	2018.04.03	2018.05.02	2018.05.21 (2018.05.16)	5일	
2018년 ▲▲ ▲▲사업(⊙⊙⊙)	49,270	-	2018.04.03	2018.05.02	2018.05.18 (2018.5.16)	2일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지방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 산림과에서는「2016년 ◐◐ ◐◐사업」등 8건에 대해 (표1)과 같이 준공검사 기한을 1일 ~ 7일 초과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각종 사업완료시 준공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